#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거 설치된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업무처리) 동일한 사무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급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그 소관을 정한다.(개정 2016. 9. 5.)

#### 제2장 산학협력단

- 제3조(산학협력총괄실) 산학협력총괄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개정 2012. 2. 1.)
  - 1. 산학협력업무 총괄, 기획 및 조정
  - 2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
  - 3.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통제
  - 4. 산학협력사업 홍보 및 유치 업무
  - 5. 산학협력관련 부속기관의 지원 및 관리
  - 6. 위원회 관련업무
  - 7. 자금 지불 및 결산 업무
  - 8. 세무 및 재무 업무
  - 9. 산학협력단 전산개발 및 운영
  - 10.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관리
  - 11. 산학협력단 교직원 인사 및 급여관리
  - 12. 단장 직인관수
  - 13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  - 14. 그 밖에 타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**제4조(연구지원실)** 연구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개정 2007. 8. 1., 개정 2010. 6. 24., 2010. 12. 6., 2012. 2. 1., 2015. 2. 6.)
  - 1.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진흥사업 지원
  - 2.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관리
  - 3.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과제 관리
  -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양성사업 과제 관리
  - 5. 일반기업체 연구과제 관리
  - 6. 간접비 관리
  - 7. 연구비 원가계산 업무
  - 8. 연구비 중앙관리(인증제 포함) 업무
  - 9. 각 사업단 연구관련 지원 업무
  - 10. 연구지원시스템 관리
  - 11. 연구계약용 직인 관수
  - 12. 연구과제 통계 및 자료관리

- 13. 연구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4. 타 대학 의뢰 실적물 심사
- 15. 연구진흥위원회,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업무
- 16. 행정연구지원
- 17. BK(두뇌한국)21 플러스 사업 지원 업무
- 18.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- 제4조의2(산학구매팀) 산학구매팀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하는 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20. 7. 1.)
  - 1. 각종 물품 구입 업무
  - 2.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업무
  - 3. 각종 용역 및 시설물 임대 계약 업무
  - 4. 외자 기자재 통관 업무
  - 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제4조의3(산학검수팀) 산학검수팀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하는 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20, 7, 1.)
  - 1. 검사 및 검수 업무
  - 2. 검수조서 및 대장의 관리
  - 3. 검수실적 통계
  - 4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**제5조(기업지원실)** 기업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12. 2. 1., 개정 2015. 8. 10., 2020 7. 1.)
  - 1. 기업지원
  - 가. 기업교육 관련 업무
  - 나. 가족회사제 관련 업무
  - 다. 비즈니스 인맥 네트워크 관리
  - 라. 산학협정 관리
  - 마. 산업체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의 관리 및 운영
  - 바.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
  - 사. 그 밖에 기업지원과 공용장비에 관련한 모든 업무
  - 2. 기술사업화지원
  - 가. 직무발명 관련 업무
  - 나.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
  - 다.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
  - 라.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
  - 마.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지원과 관리
  - 바. 학교기업 설치 및 지원
  - 사. 기술창업 지원
  - 아. 학생, 교원 및 직원 창업 지원 업무
  - 자. 연구소 기업 창업 지원 업무
  - 차. 벤처 연계형 창업 및 창업보육 사업과 연계한 지원 업무
  - 카, 글로벌 창업 지원 업무

타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의2(기술사업화실) (삭제 2020. 7. 1.)

제6조(공용장비지원실) (삭제 2015. 8. 10.)

- **제7조(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**)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13. 8. 19., 2020. 7. 1.)
  - 1.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사업 관리
  - 2. 기술향상을 위한 현장지도, 교육 및 훈련
  - 3.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
  - 4. 제품의 검사, 분석, 성능시험의 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
  - 5. 산업기술정보의 분석 및 지원
  - 6. 산업기술에 관한 강연회, 공개강좌 및 전시회
  - 7.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7조의2(산학연구소) 산학연구소는 국가지방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15. 8. 10.)
  - 1. 연구조사
  - 2. 경영컨설팅
  - 3.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
  - 4. 계약금액 조정
  - 5. 개발비용 산정 및 확인
  - 6. 학술용역
  - 7. 사업타당성 검토 및 조사
  - 8. 중소기업 경영진단과 지도상담
  - 9. 연구발표회와 연수회 및 초청강연회개최
  - 10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7조의3(미래산업전략연구센터) (삭제 2019. 2. 1.)

**제8조(기타)** 이 규정에 사무분장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분장은 당해 부서 및 센터 (기관)의 규정에 의한다.

### 부칙

- 1.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5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7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8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9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10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## 6-0-3-4 산학협력단

- 11.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2.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